#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근로자 고용 신고서

- ※ 제2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 각각의 자격취득일 또는 월 소득액(소득월액, 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제1쪽)

접:	수번호				접수일								처리	기간: 39	일(고용5	면험은 5일)			
		사업장관	리번호 1	23-45-6789	90-0	-0 명칭 복지상사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사업장	소재지 대구광역시 동·			동구 신천3동 68-1	F구 신천3동 68-1 우편번호(44428)													
		전화번호		052-123-	-4567					팩스	번호 052-12	3-4567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	급인 관리번:	호(건설공시	등의 미승	인 하수급	급인만 해	당함)			
	성명	н	국적				국민연금				건강보	· · · · · · · · · · · · · ·				고용보험 • 선	<u></u> 산재보험		
구 분			44	대표자	월 소득액 (소득월액·보수월액·	자격 취득일	자격	<b>트</b> 수		자격	보험료 자격	공무원	• 교직원		1주	계약 종료	보 보 부고	험료 나구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분	주민등록 (외국인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국내거소신고번호)		아부	월평균보수액) (원)	(YYYY. MM.DD)	자격 취득 부호	특수 직종 부호	직역연 금부호	자격 취득 부호	감면	회계명	직종명	직종 직종명 <sup>부호</sup>	1주 소정 근로	0 연월 (계약직만	(해당지	 나만 작성)	지원 신청
	국내거소신					원) MM.DD)	/부호	/부호	시간	작성)	부호	사유							
1	김근로			[]예	1500000원	2018.01.	[]국민연금 []건공 ([]취득 월 납부 희망)			[]건강보험	·보험 ([]피부양자 신청)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예	
	123456-123	4567		[]아니오		01				00				155	40	201812			[]아니오
2				[]예 []아니오			[ ([]취 <sup>[</sup>	]국민연금 등 월 납부	크 희망)	[]건강보험	l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고용보험(계약직 여 []산재보험		직 여부: []예,	·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3				[]예 []아니오				]국민연금 등 월 납부		[]건강보험	([]피부양:	자 신청)		[]고용 []산자		직 여부: []예,	[]아니오)		[]예
4				[]예 []아니오				│ ]국민연금 등 월 납부		[]건강보험	낭보험 ([]피부양자 신청)			[]고용보험(계약직 여부:[]예, []아니오) []산재보험				[]예 []아니오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2021년 7월 13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김모씨 (김모씨서명)

/ []보험사무대행기관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제2쪽								
	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첨부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수수료								
ద   서류	건강보험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	레 없은								
		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의 경우에									
		만 제출합니다) 1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적은 서류									
		유의사항									
건강5	무현	를 때에는 제5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승은 가입	2.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절차는 가까운 지사방문,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M건강보험' 등에서 가능합니다.									
고용5	무런   - '''	1. 임의가입대상인 외국인 및 공무원은 "외국인(공무원)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0-	2. 당연가입내상인	2. 당연가입대상인 예술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5	보 얼 □ □	3. 제1쪽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O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지원 1	신성 에는 해당 근로사의	l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1175111 71017	작성방법	·								
		1. 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에 관하여 해당되는 "[]"에 "√"표시를 합니다.									
고토	2.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자 저이야								
공통사	2. 성명 및 주민등록 사항 3. 자격취득일란에는	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의 경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	장 전입인								
공통서	2. 성명 및 주민등록 사항 3. 자격취득일란에는 때에는 상대 사업	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의 경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경 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장 전입인								
공통서	2. 성명 및 주민등록 사항 3. 자격취득일란에는 때에는 상대 사업 4. 외국인의 경우에	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의 경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 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는 국적 및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적은 내역)을 적습니다.									
공통서	2. 성명 및 주민등록 사항 3. 자격취득일란에는 때에는 상대 사업 4. 외국인의 경우에 1. 특수직종부호는	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의 경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경 검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는 국적 및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적은 내역)을 적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광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고,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									
	2. 성명 및 주민등록 사항 3. 자격취득일란에는 때에는 상대 사업 4. 외국인의 경우에 1. 특수직종부호는 사하는 경우에는 2. 국민역극의 경우	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의 경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경 검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는 국적 및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적은 내역)을 적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광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고,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객									
공통사	2. 성명 및 주민등록 사항 3. 자격취득일란에는 때에는 상대 사원 4. 외국인의 경우에 1. 특수직종부호는 사하는 경우에는 2. 국민연금의 경우	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의 경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경 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는 국적 및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적은 내역)을 적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광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고,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 · "부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습니다. 당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성명 및 주민등록 사항 3. 자격취득일란에는 때에는 상대 사업 4. 외국인의 경우에 1. 특수직종부호는 사하는 경우에는 2. 국민연금의 경우 3. 취득일이 1일인	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의 경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경 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나는 국적 및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적은 내역)을 적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광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고,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 "부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습니다. ·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득 월 납부 희망"의"[]"에 "√" 표시를 합니다.	작업에 중								
	2. 성명 및 주민등록 사항 3. 자격취득일란에는 때에는 상대 사업 4. 외국인의 경우에 1. 특수직종부호는 사하는 경우에는 2. 국민연금의 경우 3. 취득일이 1일인	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의 경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경 검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는 국적 및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적은 내역)을 적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광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고,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 · "부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습니다. ·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 ]취득 월 납부 희망"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	작업에 중								
	2. 성명 및 주민등록 사항 3. 자격취득일란에는 때에는 상대 사원 4. 외국인의 경우에 1. 특수직종부호는 사하는 경우에는 2. 국민연금의 경우 3. 취득일이 1일인 4. 「공무원연금법 로 가입할 수 없	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의 경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경 검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는 국적 및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적은 내역)을 적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광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고,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 · "부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습니다. ·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 ]취득 월 납부 희망"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	작업에 중								
국민연	2. 성명 및 주민등록 사항 3. 자격취득일란에는 때에는 상대 사업 4. 외국인의 경우에 1. 특수직종부호는 사하는 경우에는 2. 국민연금의 경우 3. 취득일이 1일인 4. 「공무원연금법 로 가입할 수 없	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의 경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경 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는 국적 및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적은 내역)을 적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광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고,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 <sup>2</sup> "부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습니다. ·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득 월 납부 희망"의 "[]"에 "√" 표시를 합니다. 」,「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 성습니다.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작업에 종								
국민연	2. 성명 및 주민등록 사항 3. 자격취득일란에는 때에는 상대 사업 4. 외국인의 경우에 1. 특수직종부호는 사하는 경우에는 2. 국민연금의 경우 3. 취득일이 1일인 4. 「공무원연금법 로 가입할 수 없 보험 공무원・교직원의 1. 산재보험 관리번	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의 경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경 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는 국적 및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적은 내역)을 적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광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고,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 "부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습니다. ·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득 월 납부 희망"의 "[]"에 "√" 표시를 합니다. 」,「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성습니다.	작업에 중								
국민연	2. 성명 및 주민등록 3. 자격취득일란에는 때에는 상대 사원 4. 외국인의 경우에 1. 특수직종부호는 사하는 경우에는 2. 국민연금의 경우 3. 취득일이 1일인 4. 「공무원연금법 로 가입할 수 없 보험 공무원・교직원의 1. 산재보험 관리번 2. "월평균 보수액"은	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의 경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경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는 국적 및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적은 내역)을 적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광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고,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격 "부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습니다.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득 월 납부 희망"의 "[]"에 "√" 표시를 합니다. 」,「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성습니다.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작업에 중								
국민연	2. 성명 및 주민등록 사항 3. 자격취득일란에는 때에는 상대 사원 4. 외국인의 경우에 1. 특수직종부호는 사하는 경우에는 2. 국민연금의 경우 3. 취득일이 1일인 4. 「공무원연금법 로 가입할 수 없 보험 공무원・교직원의 1. 산재보험 관리번 2. "월평균 보수액"은 - 근로자의 보수	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의 경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경업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는 국적 및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적은 내역)을 적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광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고,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적 "부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습니다.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득 월 납부 희망"의 "[]"에 "√" 표시를 합니다. 」,「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성이다.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르거나,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인 예술인인 경우에는 신고서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 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노무제공 개시 이후 1년간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 종사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적음). 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연말정산에 따른 감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단양: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연말정산에 따른 감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작업에 중								
국민인	2. 성명 및 주민등록 3. 자격취득일란에는 때에는 상대 사원 4. 외국인의 경우에 1. 특수직종부호는 사하는 경우에는 2. 국민연금의 경우 3. 취득일이 1일인 4. 「공무원연금법 로 가입할 수 없 보험 공무원・교직원의 1. 산재보험 관리번 2. "월평균 보수액"은 - 근로자의 보수	변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의 경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경접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는 국적 및 채류자격(외국인등록증 적은 내역)을 적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광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고,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 "부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습니다.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득 월 납부 희망"의 "[]"에 "√" 표시를 합니다. 」,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성이다.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으로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소 보험 당면적용대상인 예술인인 경우에는 신고서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소 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노무제공 개시 이후 1년간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 종사개월수로 나는 금액을 적음). 돈 「소득세법」 제1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장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편: 「소득세법」 제1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비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장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편: 「소득세법」 제10조에 따른 신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	작업에 중								
국민연 건강5 고용5	2. 성명 및 주민등록 3. 자격취득일란에는 때에는 상대 사원 4. 외국인의 경우에 1. 특수직종부호는 사하는 경우에는 2. 국민연금의 경우 3. 취득일이 1일인 4. 「공무원연금법 로 가입할 수 없 보험 공무원・교직원의 1. 산재보험 관리번 2. "월평균 보수액"은 - 근로자의 보수 - 예술인의 보수	반호(외국인등록반호・국내거소신고반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반호(외국인등록변호・국내거소신고반호)를 적습니다. 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의 경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경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는 국적 및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적은 내역)을 적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광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고,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 "부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습니다. '태생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득 월 납부 희망"의 "[]"에 "√" 표시를 합니다. J., 「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성습니다.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호와 고용보험 관리반호가 다르거나,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인 예술인인 경우에는 신고서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으면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 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노무제공 개시 이후 1년간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 종사개월수로 나는 금액을 적음). (조수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연말정신에 따른 감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자급수세법」 제2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연말정신에 따른 감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지급수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교에 근로소득을 뺀 금액(연말정신에 따른 감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기수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제5호에 따른 비교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	작업에 :								
국민연 건강5 고용5	2. 성명 및 주민등록 3. 자격취득일란에는 때에는 상대 사원 4. 외국인의 경우에 1. 특수직종부호는 사하는 경우에는 2. 국민연금의 경우 3. 취득일이 1일인 4. 「공무원연금법 로 가입할 수 없 보험 공무원・교직원의 1. 산재보험 관리번 2. "월평균 보수액"원 - 근로자의 보수 예술인의 보수	변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의 경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경접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는 국적 및 채류자격(외국인등록증 적은 내역)을 적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광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고,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 "부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습니다.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득 월 납부 희망"의 "[]"에 "√" 표시를 합니다. 」,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성이다.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으로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소 보험 당면적용대상인 예술인인 경우에는 신고서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소 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노무제공 개시 이후 1년간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 종사개월수로 나는 금액을 적음). 돈 「소득세법」 제1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장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편: 「소득세법」 제1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비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장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편: 「소득세법」 제10조에 따른 신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	작업에 :								
국민연 건강5 고용5	2. 성명 및 주민등록 사항 3. 자격취득일란에는 때에는 상대 사원 4. 외국인의 경우에 1. 특수직종부호는 사하는 경우에는 2. 국민연금의 경우 3. 취득일이 1일인 4. 「공무원연금법로 가입할 수 없 보험 공무원・교직원의 1. 산재보험 관리번 2. "월평균 보수액"된 여술인의 보수 예술인의 보수 예약 종료일이 속 1 보험로 무과부호 5. 보험료 부과부호	반호(외국인등록반호・국내거소신고반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반호(외국인등록반호・국내거소신고반호)를 적습니다. 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의 경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 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는 국적 및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적은 내역)을 적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광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고,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 "부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습니다. •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득 월 납부 희망"의 "[]"에 "√" 표시를 합니다. 」,「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 (습니다.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르거나,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인 예술인인 경우에는 신고서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 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노무제공 개시 이후 1년간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 종사개월수로 나는 금액을 적음). ※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연말정신에 따른 갑금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악을 가능해법」 때 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연말정신에 따른 감계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다음 주산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1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직 종사자 여부에 대해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종사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기간이 정해? 중사자 여부에 대해 "[]"에 "전》 표시를 하고, 계약직 종사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기간이 정해?	작업에 중								

#### 자격취득 부호 등

|[자격취득 부호] 01. 18세 이상 당연취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가목,나목 및 제4호 가목, 나목, 다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03. 18세 미만 취득 09. 전입(사업장 통ㆍ폐합) 11. 대학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특수직종 부호 1. 광원 2. 부원

[직역연금 부호] 1.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2.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자

[자격취득 부호]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 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 신청 13. 기타 14.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보험료 감면 부호]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 군 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 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섬·벽 지(사업장) 42. 섬·벽지(거주지) 81. 휴직

[직종 부호] 근로자의 경우 제4쪽의 별지[1.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고,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의 경우 제4쪽의 별지[2. 예술인 직종현황]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건강보험

			부고	범위					부과	범위			
	부	신	산재보험		.용보험			산재보험		고	용보험		
고용보험	ত্	산재 임금채권 실업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직업능력	대상 종사자		산재 보험	임금채권 부담금	실업 길업 극업능력 대발		대상 종사자		
• 산재보험	51	0	0	х	Х	09.고용보험미가입.외국인근로자 10.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1.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55	х	х	0	0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적용자 07.해외파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52	0	х	х	Х	03.현장실습생(「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 13.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56	х	Х	0		01.별정직·임기제(일반, 전문, 시간선택제, 한시)공무원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25.예술인	
	54	0	х	0	0	22.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 2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계층, 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58	0	х	Х	0	21.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 [별지] 1.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

(2/1) 1. 인기포 ( 기업년 TRINECO 10) 8 포인		다 서체 사바 이라 되네 ( 1		
0.경영·사무·금융·보험직	158 소방·방재·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82. 금속·재료·설치·정비·생산직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01.관리직(임원·부서장)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 521 여행 서비스원 -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		
0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2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21. 교육직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822 판금원 및 제관원 823 단조원 및 주조원	
01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관리자 015 영업·판매·운송 관리자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53. 음식 서비스직	824 용접원 825 도장원 및 도금원	
015 영합·현대·군공 현리사 016 건설·채굴·제조·생산 관리자	212 학교 교사   213 유치원 교사	531 주방장 및 조리사 532 식당 서비스원	825 도장원 및 도금원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02. 경영·행정·사무직	214 문리·기술·예능 강사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53.2 작당 시미스현 54. 경호·경비직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22. 법률직	541 경호·보안 종사자	- 831 전기공 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021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022 경영·인사 전문가	221 법률전문가	542 경비원	833 박전·배전 장치 조작원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024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	222 법률사무원	55.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	834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835 전기·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025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026 경영지원 사무원	23. 사회복지·종교직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836 전기 · 전자 부품 제품 조립원	
027 회계·경리 사무원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232 보육교사 및 기타사회복지 종사자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03. 금융·보험직	24. 경찰·소방 교도직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562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원	
W. 8 E84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6. 영업·판매·운전· <del>운송</del> 직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031 금융 보험 전문가 032 금융 보험 사무원	25. 군인	61. 영업·판매직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852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032 금융·보험 사무원 033 금융·보험 영업원	250 군인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612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852 고부 플라스틱 및 화약세품 생산기계 소식원 및 소립원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3. 보건·의료직	[613 텔레마케터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86. 섬유·의복생산직	
11.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30. 보건의료직	615 판매 종사자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861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작원	
110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302 수의사 303 약사 및 한약사	62. 운전·운송직	864 제화원, 기타 섬유·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304 간호사   305 영양사	621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622 자동차 운전원	87. 식품가공·생산직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 306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307 보건·의료 종사자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871 제과 제빵원 및 떡제조원 872 식품 가공 기능원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131 컴퓨터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7. 건설·채굴직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설치·정비·생산직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41. 예술·디자인·방송직	70. 건설·채굴직		
134 데이타·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135 정보보안 전문가	411 작가·통번역가	701 건설구조 기능원 702 건축마감 기능원 703 배관공	881 인쇄기계·사진현상기 조작원 882 목재·펄프·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136 통신 · 방송송출 장비 기사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413 학예사사사기록물관리사	702 선국미심 기능년 703 배관공	883 가구 목제품 제조·수리원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110   414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885 악기·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16 연극 영화 방송 전문가   417 문화 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89. 제조 단순직	
	역17 교회 에칠 기탁이 늦 에너이	8. 설치·정비·생산직	890 제조 단순 종사자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42. 스포츠 · 레크리에이션직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9. <del>농</del> 림어업직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20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811 기계정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90. 농림어업직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5 에너자·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812 운송장비 청비원 -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QQ1 자무기에 조건지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1. 미용ㆍ예식 서비스직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814 냉난방 설비 조작원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원	901 작물재배 종사자 902 낙농·사육 종사자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11 미용 서비스원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817 운송장비 조립원	903 임업 종사자 904 어업 종사자	
	VALUE ON O 117 1171-12	01/ 단증하다 프립턴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 2. 예술인의 직종현황

	2. 예술인의 식종현왕
	창작 (44~45)
	441 (창작)문학 442 (창작)미술 443 (창작)시진 444 (창작)건축 445 (창작)음악 446 (창작)국악 447 (창작)무용 448 (창작)연극 449 (창작)영화 450 (창작)연예 451 (창작)만화 452 (창작)기타
	실연 (46~47)
	461 (실연)문학 462 (실연)미술 463 (실연)시진 464 (실연)건축 465 (실연)음악 466 (실연)국악 467 (실연)무용 468 (실연)연극 469 (실연)영화 470 (실연)연예 471 (실연)만화 472 (실연)기타
	기술지원 (48~49)
1	481 (기술지원)문학 482 (기술지원)미술 483 (기술지원)미술 484 (기술지원)건축 485 (기술지원)음악 486 (기술지원)금악 487 (기술지원)구용 488 (기술지원)연극 489 (기술지원)연리 490 (기술지원)연예 491 (기술지원)만화 492 (기술지원)만화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제5쪽)

가입자 성명	병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주민등록번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보훈보신	외국인					
	관계	성명	구인등록반호 (외국인등록번호·국내가소신고번호)	종별 부호	등록일 (YYYY.MM.DD)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피부양자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건 걸

신고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 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3.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유의사항

※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절차는 가까운 지사방문,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M건강보험'등에서 가능합니다.

### 작성방법

###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적어야 합니다.

-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예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 증조부모 등)
-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 를 적습니다.
- 3.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에는 종별 부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종별 부호]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 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19.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적은 내용) 및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 5.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 유무란에 "○"표시를 합니다.